

점자교원 양성과정 적합 여부 확인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 기간		50일	
신청인	기관명			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			
	주소			홈페이지			
담당자	성명			전화번호			
	전자우편			팩스번호			
과정명							
과정 유형	[] 주간 과정 [] 야간 과정 [] 단기 집중 과정 [] 방학 과정 [] 기타			과정 개설 시기	년 월 일		
모집 정원				교육 기간			
수업 일수 / 주당				수업 시간대			
영역	교과목명			교과목별 수업 시간	영역별 수업 시간	비고	
시각장애의 이해							
점자 규범							
점자 교육과정							
점자 수업							
점자교육 실습							
총 교과목 수				총 수업 시간	(시간)		

「점자법 시행령」 제4조제3항 및 「점자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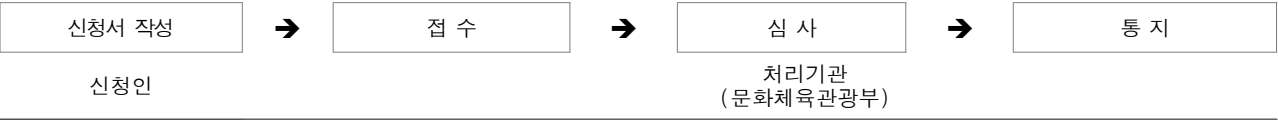
(뒤쪽)

첨부서류	1. 점자교원 양성과정 소개서 2. 교과목별 강의계획서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확인사항	2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